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화〉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8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4582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위촉<br>의무화(안 제107조제3항제2호) ..... | 2 |
| ※ 참고자료 .....                                                      | 9 |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4582)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6.
3. 회 부 일 : 2025. 11.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 Ⅲ. 검토의견

#### 1.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화(안 제107조제3항제2호)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sup>1)</sup>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이하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제2호)

| 현행                                                                                                                                                                             | 개정안                                                                                                                                                                                                                                                                                                               |
|--------------------------------------------------------------------------------------------------------------------------------------------------------------------------------|-------------------------------------------------------------------------------------------------------------------------------------------------------------------------------------------------------------------------------------------------------------------------------------------------------------------|
|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br>· ② (생략)<br><br>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br>1. (생략)<br><br>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br>· ② (현행과 같음)<br><br>③ -----<br>-----<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br>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br>가.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br>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br><br>부칙<br><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 제2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는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가의 교통체계<sup>2)</sup>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 (참고 1 및 참고 2, 참조)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 관련 각종 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국가교통조사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과 교

####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2)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6호)

통물류거점의 지정·변경,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교통체계 관련 제도 개선,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삭제 <2020. 6. 9.>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교육부차관 · 법무부차관 · 국방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 산업통상부차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 해양수산부차관 · 기획예산처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10개 부처의 차관 각 1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18명 이내)은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위촉직 위원은 교통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현행 전문성 자격을 갖춘 자 외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은 교통정책의 추진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주요 요소로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국가교통정책 심의기구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교통체계 및 교통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부응하는 교통정책 실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봄.

【 시·도지사 협의체 개요 】

| 구 분               | 내 용                                                                                           |
|-------------------|-----------------------------------------------------------------------------------------------|
| 명 칭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
| 설립연혁              | (`99.1)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설립 의결<br>(`05.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개소<br>(`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기능 이관 |
| 구 성<br>(`26.1.현재) | 17개 광역 시·도지사<br>(회 장) 인천광역시장(유정복)<br>(부회장) 경상남도지사(박완수), 세종특별자치시장(최민호)<br>(감 사) 광주광역시장(강기정)    |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위촉직 위원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심의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특정 요건의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지 않고 위원 자격요건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위촉 권한을 가진 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는 위원을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균형성 원칙<sup>3)</sup>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 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위원회 구성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입법례 】

| 구 분                                         | 내 용                                                                                                                                                                                                                                                                                                                                                                                                                                                                                                                                                                                                                                                 |
|---------------------------------------------|-----------------------------------------------------------------------------------------------------------------------------------------------------------------------------------------------------------------------------------------------------------------------------------------------------------------------------------------------------------------------------------------------------------------------------------------------------------------------------------------------------------------------------------------------------------------------------------------------------------------------------------------------------|
| <p>「고용정책 기본법」<br/>(고용정책심의회)</p>             | <p><b>제10조(고용정책심의회)</b>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li> <li>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④ ~ ⑥ (생략)</li> </ol>                         |
|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br/>(감염병관리위원회)</p> | <p><b>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b>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b>제10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u>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li> <li>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li> <li>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

##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 1) 국토교통부

국가정책 및 주요 계획에 지방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부·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지역·여성·청년 등 전문가의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 곤란함.

###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교통과 관련된 지방의 책무성과 국가정책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교통위원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

## 참고 1

## 국가교통위원회 개요

①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제107조

② (설치일자) 1999. 8. 9

③ (설치목적)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등

④ (심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6.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7.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의 수립 및 변경
13.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 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국가교통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위원장(국토부장관), 부위원장(국토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등 **12명**
  - (위촉직) 공공(연구)기관의 장 등 교통관련 전문가 **17명**
- (실무위원회)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5개 분야)를 운영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

## ⑥ 국가교통실무위원회

\* 실무위는 3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장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교통물류실장), 부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등 위원 총 30명 (당연직 13명, 위촉직 17명)
-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원장(모빌리티자동차국장), 부위원장(모빌리티총괄과장) 등 위원 총 29명 (당연직 14명, 위촉직 15명)
-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교통물류실장), 부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등 위원 총 29명 (당연직 17명, 위촉직 12명)
- ④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교통물류실장), 부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등 위원 총 28명 (당연직 13명, 위촉직 15명)
- ⑤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부위원장(교통서비스정책과장) 등 위원 총 7명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자료 : 국토교통부

## 참고 2

## 제12기 국가교통위원회 구성 ('24.10.10. ~ '26.10.9.)

| 연번 | 구분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주요 경력                                       | 비고      |
|----|--------------|-----------|--------|--------------|---------------------------------------------|---------|
| 1  | 당연직<br>(12명) | 국토교통부     | 장 관    |              |                                             | 위원장     |
| 2  |              | 국토교통부     | 제2차관   |              |                                             | 부위원장    |
| 3  |              | 기획예산처     | 제2차관   |              |                                             |         |
| 4  |              | 교 육 부     | 차 관    |              |                                             |         |
| 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차관   |              |                                             |         |
| 6  |              | 법 무 부     | 차 관    |              |                                             |         |
| 7  |              | 국 방 부     | 차 관    |              |                                             |         |
| 8  |              | 행정안전부     | 차 관    |              |                                             |         |
| 9  |              | 산업통상자원부   | 제1차관   |              |                                             |         |
| 10 |              | 기후환경에너지부  | 차 관    |              |                                             |         |
| 11 |              | 해양수산부     | 차 관    |              |                                             |         |
| 12 |              | 경 찰 청     | 청 장    |              |                                             |         |
| 13 | 위촉직<br>(17명) | 국토연구원     | 원장     | 심교언          | -건국대 교수<br>-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장              | 비수도권    |
| 14 |              | 한국교통연구원   | 원장     | 김영찬          | -서울시립대 교수<br>-대한교통학회 회장                     | 비수도권    |
| 15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원장     | 김종덕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br>-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비수도권    |
| 16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사장    | 정용식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br>-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비수도권    |
| 17 |              | 경기대       | 조교수    | 김정화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br>-아주대 연구교수                   | 女       |
| 18 |              | 홍익대       | 부교수    | 김태희          | -대광위 광역교통실무위원회 위원<b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       | 女       |
| 19 |              | 건축공간연구원   | 부연구위원  | 남궁지희<br>(연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 女, 비수도권 |
| 20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위원   | 박진경<br>(연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女, 비수도권 |
| 21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송준호          |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연구원                              | 청년      |
| 22 |              | 한국해양대     | 교수     | 신영란          | -부산대 전임대우강사<br>-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女, 비수도권 |
| 23 |              | 한국교통대     | 교수     | 우정욱          |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br>-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 女       |
| 24 |              | 항공안전기술원   | 원장     | 이대성          | -국토부 모빌리티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위원<br>-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장     |         |
| 25 |              | 서울연구원     | 연구위원   | 이설영          |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br>-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女, 청년   |
| 26 |              | KAIST     | 교수     | 장기태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 센터장<br>-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 비수도권    |
| 27 |              | 전북대       | 교수     | 장태연          | -도시건축연구소 연구원                                | 비수도권    |
| 28 |              | 대한교통학회    | 회장     | 정진혁          | -연세대 교수<br>-중앙대 교수                          |         |
| 29 |              | 화성시연구원    | 연구위원   |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

자료 : 국토교통부